

2023학년도 폭력예방통합교육 안내

폭력예방통합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**반드시** 이수해야 하는 **법정의무교육**입니다.



교육대상

학교의 모든 구성원



교육내용

성희롱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



교육방법

전임 교원, 팀장급 이상 직원	8월말 전체 교수회의에서 맞춤형 별도 대면 교육
비전임 교원, 차장급 이하 직원, 조교	샘물포털의 e-Campus 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 (136분) + 퀴즈
학부생, 대학원생	샘물포털의 e-Campus 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 (110분) + 퀴즈



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

해당기관에서 이수증 발급받아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이수처리  kdh7027@smu.ac.kr



문의사항 안내

 인권센터 hrc.smu.ac.kr



서울 02-2287-7027

천안 041-623-0067